의안번호	제 295 호
의결년월일	1995. 7. 31. (제 35 회)

의결사항	원안가결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상근의원 외 3인
발의년월일	1995. 7. 21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 9 5

발의년월일 : 1995. 7. 21
발 의 자 : 이상근의원 외 3인

1.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으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지급규정 신설과 용어등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개정코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제명을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나. 의정활동비지급 규정의 신설 (안 제1조, 제2조)

다.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용어변경 (안 제1조, 제3조)

라. 회의수당지급기준 규정 강화 (안 제3조, 제4조)

마. 여비지급기준 규정 강화 (안 제5조, 제6조)

3.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4703호)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에게는 1인 매월 350,000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일은 고성군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3조(회의수당 지급) ①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실제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계산하여 지급하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한 위원회 활동차원에서의 현지조사 활동에 참석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4조(회의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한다.

제5조(여비지급)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단, 전단의 공무여행의 경우란 의회의 회의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단체의 연찬회 등 참석, 특정하고도 구체적 목적을 지닌 자료수집이나 조사활동등의 경우를 말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 ①제5조에 의한 여비의 종류는 국내여행시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해외여행시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임, 선임, 항공임, 자동차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③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되 군내 출장시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며,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내무부지침과 고성군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7. 1부터 적용한다.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지교통비 (1 일당)	숙박비 (1 일당)	식 비 (1 일당)
의 장 부의장	1 등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6, 500	20, 700	11, 000
의 원	2 등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6, 500	18, 200	10, 500

비고 :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1) 아세아주 ·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2) 남 · 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트리니다드토바고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스위스, 스웨덴, 필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4) 중동 · 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루운,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다. 다등급

(1) 아세아주 · 대양주 : 인도, 터어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지아, 싱가폴,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2) 남 · 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수리남

(3) 유럽주 : 덴마아크, 아일랜드, 포르투칼, 희랍,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4) 중동 · 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등급

(1) 아세아주 · 대양주 :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휘지, 네팔, 몽골

(2) 남 · 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구아이, 아르헨티나

(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4) 중동 · 아프리카주 : 레바논, 북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수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와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3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철 도 임	선 임	항공임	자동차임	일 비 (1일당)	숙 박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 장 부의장	* 2등급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등급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 등급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1등 정액	실비액	25	가등급 130 나등급 90 다등급 72 라등급 62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의 원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등 정액		20	가등급 114 나등급 74 다등급 55 라등급 46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5	180